

인사국 국장 권한으로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중략)

빈첸초 캄피텔리 부산 명예영사에게는 이탈리아의 이익과 이탈리아 자국민의 보호라는 보편적인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의무 외에 빈첸초 캄피텔리 부산 명예영사가 수행할수 있는 영사업무는 다음과 같이 국한된다:

- a) 지역 관할청이나 이탈리아 시민, 선박, 이탈리아 국적기 및 외항기의 선장이나 기장으로부터 받은 신원관련 증빙서류를 실제로 접수하고 이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전달하는 업무;
- b) 선박 혹은 항공기의 선장이나 기장, 즉 증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의 신원 관련 증명서를 실제로 접수하고 이를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전달하는 업무;
- c) 해상사고 혹은 항공기 사고 혹은 선상, 오락선상 혹은 국적기내에서 일어난 사고 관련 예비조사(preliminary investigation)업무. 예비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언제나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상의해야 한다.
- d) 명예영사관이 속하는 행정지역내 거주 중인 자국민이 이탈리아에 등록하기 위한 호적 등록 서류 및 투표인 명단 등록 요청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전달하는 업무;
- e) 이탈리아 시민이 제출한 행정서류의 서명공증 업무. 단 이러한 업무는 법률상 허용된 경우에 국한된다;
- f)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전달업무. 단 타국 시민권자나 해외 거주자의 증명서는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g) 직인 날인 및 공증 업무;
- h) 사적인 합의서 하단에 표기된 서명 공증업무;
- i) 공정증서 서명공증;
- j) 해당 명예영사관이 속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이탈리아 시민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전달하는 업무;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발급한 여권을 여권 소지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 측에 여권 수령증을 전달하는 업무;

- k) 이탈리아 시민이나 유럽연합국가 시민권자가 임시 여행 허가증 (ETD)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접수하고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에 전달하는 업무. 단, 그 전에 도난 신고서 혹은 분실 신고서 혹은 여행 관련 서류를 접수한 후 2000.12.28 대통령령 445 조 46 항과 47 항에 명시된바에 따라 대체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을 위해 동일법령 제 71 항에 명시된 확인절차를 실행한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 발행한 ETD 를 교부하는 업무. ETD 는 신청인 본인이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는 여행이나 신청인 본인이 영주권자격이 있는 국가를 목적지로 하는 여행에 한해 단 1 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국가가 목적지 일때도 ETD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 l) 어려움에 처했거나 일시적으로 곤경에 처한 자국민 지원 업무. 이러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을 빌려주어야 할 경우 자금 집행이 합당한지 조사해야 한다. 단 국가에 이러한 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전제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이다.
- m) 국적선박의 입.출항시 현행법에서 요청하는 절차를 실행하고 이에대한 기록을 보관한다;

본 법령은 이탈리아 공화국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2015 년 3 월 19 일 로마

벨로니 국장